
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6.

발 의 자 : 이학영 · 이용우 · 이해민
진성준 · 안호영 · 황명선
박해철 · 조정식 · 박 정
김태선 · 강득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(총액)를 포함하도록 하고,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(제20조 및 제26조제1항). 또한,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(제26조제2항 · 제3항).

그러나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 대가의 내역을 요구하기 어렵고, 그 내역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세부 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움.

이에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,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,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먼저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, 근로자파견 대가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, 파

견사업주의 이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견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, 이를 통해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책정을 유도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파견근로자별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포함해야하는 사항 중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파견근로자의 임금,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, 파견사업주의 이윤, 그 밖에 관리운영비 등 파견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하도록 함(안 제20조제1항제11호).
- 나.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계약에 파견대가의 세부내역(임금, 사업주 부담금, 이윤, 관리운영비 등)을 알려주도록 함에 따라,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은 삭제함(안 제26조제2항, 제3항 및 제46조제5항제3호 삭제).
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의 대가

가. 각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

나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료등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다. 파견사업주의 이윤

라. 그 밖에 관리운영비 등 파견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

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46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0조제1항제11호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·갱신하거나 종전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

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계약의 내용 등)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.	제20조(계약의 내용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11. 근로자파견의 대가</u>	<u>11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의 대가</u> <u>가. 각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</u> <u>나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료등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 <u>다. 파견사업주의 이윤</u> <u>라. 그 밖에 관리운영비 등 파견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</u>
12. (생 략)	1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취업조건지 고지) ① (생략) ② <u>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</u> ③ <u>파견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.</u>	제26조(취업조건지 고지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
제46조(과태료) ① ~ ④ (생략)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2. (생략) 3. <u>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</u> 4. ~ 7. (생략) ⑥ (생략)	제46조(과태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4. ~ 7.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